제94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무인비행장치 인증 기술기준 강화(강화) ○ 무인비행장치가 충족해야 할 기술기준 [별표 6] 구체화 – (무인동력비행장치) 9가지 항목*에서 안전성 인증을 위해 제작자들이 따라야 할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 * ▲일반, ▲비행, ▲구조, ▲설계 및 제작, ▲양력/추력/동력 시스템, ▲시스템 및 장비, ▲명령 장치 및 일반 정보, ▲C2 링크, ▲문서 – (무인비행선*) 현행 안전성 인증기준을 유지 *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(시행규칙 제5조제6호나목) – 다만, 기체 규격이나 적합성 입증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며, 안전성인증 신청자는 산업 표준 등을 제시하여 기술 적합성 입증 가능 ▶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10조	1.비중요
2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시설기준 신설(신설) ○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–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·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종류의 범위를 확대 * (현행) 5개(육상수조식·육상축제식·밧줄식·말목식·뗏목식) → (확대) 5개+해상축제식 ▶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석유대체연료 및 친환경정제원료 사용 등 관련 의무 (신설) ㅇ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'생산유종' 신설 ㅇ 원료의 종류, 투입공정, 생산유종, 친환경 확인자료 등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에 따른 보고내용 규정 ㅇ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 ▶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3조,제42조의3,제43조	1.비중요
4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석유대체연료 및 친환경정제원료 사용 등 관련 의무 (신설) ㅇ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시기,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,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(3.31일) 보고하도록 규정 ㅇ 아울러, 원유 및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친환경 정제원료의 수급상황을 매달 보고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석유대체연료 제조 · 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‘생산유종’ 신설 – 석유대체연료 제조 · 수출입업자가 기존에 생산하는 석유대체연료 외의 다른 석유대체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–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신청서(별지 제28호서식) 및 변경등록 신청서(별지 제30호 서식)에 생산유종란을 추가 ▶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, 제38조, 제45조, 제45조의3	
5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(신설) ○ 중고 휴대폰을 매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 – ▲ 이용자 보호 요건 구비, ▲ 거래의 안정성·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·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 구축, ▲ 판매 체계(성능확인서 발급, 반품·환불 절차 등) 구축, ▲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○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,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로 규정 ▶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,제3조의4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(신설) ※ 소화물배송대행업은 신청을 통해 인증을 받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될 수 있음 ○ 인증사업자·영업점은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며, 확인이 완료된 후 종사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○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경우, 별지 제14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 ▶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	1.비중요
7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시설기준 신설(신설) ○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신설 –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이 신설됨에 따라 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생산할 수 있는 종자의 종류와 규모·장비 등 시설기준을 규정 * 규모(수조식 : 수조면적 33㎡↑, 축제식 : 시설면적 1천㎡↑), 장비 공통(사육수 공급시설, 액화산소공급장치·산소발생기·해수여과시설·해수저장시설·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) ▶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2.수산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(신설)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 – 종자를 판매 · 보급하려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(명칭 · 무게 등)를 용기 ·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 * 별표 4의2 : 종자의 명칭, 생산지,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, 포장당 무게 · 개수, 입식일 등 ▶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2조	
8	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병해충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(신설) ○식물재배자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전에 수행하는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규정 ▶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9 2.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(신설) ○ 검사인력수 및 자격, 시설요건, 검사설비, 지정신청 제한기관 등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요건 규정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,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▶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, 제37조의1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조사인원수, 조사인력자격, 예찰전문인력 교육, 예찰능력 평가 등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규정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▶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, 제37조의27	
9	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실태조사의 방법 및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(신설) ㅇ(실태조사의 방법) 실태조사는 매년 현장조사,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 ㅇ(결과 공표)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, 약국 명칭·주소, 약국 개설자 이름, 위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함 ▶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2.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약사·한약사가 약사법 제24조의2(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금지) 를 위반한 경우 가액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기준 신설 ▶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○ 소화기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해 부식시험, 온도상승시험, 절연내력시험, 진동시험 등 각종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▶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,제3조,제4조,제6조,제7조,제8조,제12조,제12조의2,제14조,제19조,제19조의2,제19조의3,제19조의4,제19조의5,제20조,제22조,제24조,제28조,제30조,제31조,제34조제37조	1.비중요
11	정기실시 공연 · 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(신설) ○ 국·공립 공연장 및 미술관의 정기 공연·전시 대상 작품 기준인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참여 비율의 산정방법 구체화 – (창작 기여도) ▵창작은 실제 공연·전시작품 기준으로 판단(각색·번역 포함) ▵창작자는 국내 생존자로 한정 ▵기여도는 공동 창작자 혹은 전시 작품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(50/100이상)로 규정 – (참여 비율) 참여 인원 비율(30/100 이상) 산정은 전체 또는 제작・기획・기술지원・실연 각각에 적용 ▶정기실시 공연 · 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,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애니메이션 근로자의 범위(신설) ○ 애니메이션 근로자를 「노동조합법」상의 근로자의 정의(제2조제1호)를 준용하여 규정 –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▶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2.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(신설) ○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애니메이션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 구체화 – (임금체불)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 시작된 날부터 1년 – (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)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1년 ▶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13	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품목제조보고 대상 지정(강화) ○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4	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위생용품 허위 · 과대 · 비방 표시 · 광고의 범위(강화) ㅇ 허위 · 과대 · 비방 표시 ·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천연, 무첨가 등 표시 기준 신설(안 별표 4 제2호 나목, 사목) –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, 전체 제품이 '천연', '자연'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 – 위생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·성분·규격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무(無), 무첨가, 0% 등의 표시·광고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2.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및 수입 · 통관 부적합하여 용도전환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 ·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 신설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	1.비중요 2.비중요
15	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자살위해물건 추가 지정(강화) ㅇ 자살위해물건 추가 지정 – "달리 분류되지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(T50.6*)를 유발하는 물질" 추가 * 통계청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▶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6	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확대(강화)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확대 – 제1종 근린생활시설 ·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 삭제①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(100㎡이상 → 0) ② 지역아동센터(300㎡이상 → 0) ·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용도 추가 : 소방서, 방송국, 침술원, 접골원 – 제2종 근린생활시설 ·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 삭제① 공연장(300㎡ 이상 500㎡ 미만 → 0) ② 안마시술소(500㎡ 이상 → 0) ·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용도 추가 ① 장의사,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,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등 ② 학원, 교습소, 직업훈련소(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) ③ 독서실, 기원 ㅇ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(매개시설, 내부시설, 위생시설 등) 설치기준 강화 ▶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,제4조	1.중요